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상업·공공청사·공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
-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을 요청하여,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견제시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상지역 (교환)

구분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비고
진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176㎡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176㎡	조정 후 양 군 면적변동 없음
음성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176㎡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176㎡	

○ 관련기관 의견

< 진천군 >

	의견
진천군수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생활권 일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
주민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구성에 따른 개발진행지역으로 입주주민이 없으며, 개발지역인 덕산면 주민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없음
군의회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음성군 >

	의견
음성군수	주민생활권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도시 계획시설 관리와 이전 공공기관을 고려, 경계변경 필요
주민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구성에 따른 개발진행지역으로 실제 거주 주민이 없어 인근 주민(맹동면)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없음
군의회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충청북도 의견 〉

-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하고 양 군의회가 동의한 사항
- 이중 공부 등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4. 검토의견

- 본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 진천·음성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하며,
 -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기관, 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음
- 본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